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85
----------	-----

2012년 7월 9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결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4월 6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2년 4월 12일 회부
- 다. 상정결과 : 제23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 6월 27일 상정·의결(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감사관 황상길)

가. 제출이유

-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보고사항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하는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민을 대변하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감사기본계획 수립 및 감사결과 보고사항 등을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함(안 제3조).
-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함(안 제3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함(안 제4조).
-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음. 단, 단순 보고사항 등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음(안 제6조제1항).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안 제6조 제2항 및 제3항).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함(안 제8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박 용 훈)

가. 위원회 설치 필요성 검토

- 본 조례안은 감사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을 대변하는 분야별 전문가가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기본계획 및 감사결과 보고사항 등에 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따라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본 위원회의 성격과 같은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자체감사기구의 설치)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자체감사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의 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본 위원회의 설치하는 시장의 「핵심정책과제」 중 하나인 시정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 중 하나로 보임.

〈 핵심 정책과제 중 〉

10. 시정운영에 있어서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정보공개를 활성화해 투명한 시정운영을 실현한다.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비리를 척결해 시정을 혁신한다.

- 〈서울 정보소통센터〉를 설립해 정보 공개의 투명성을 높인다.
-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청렴계약제도를 확대 운영한다.
- 합리적인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및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 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시민참여예산제도를 즉각 실시한다.

-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2011년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이하 「시민감사옴부즈만 조례」)를 개정하면서 감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감사청구심의회(신설)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의결하여 10월 27일 시행되었으나, 금번 임시회에서 일부 기능을 추가하여 시민감사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임.

- ※ 당시 집행부는 위원회간 기능이 유사·중복될 경우 통합·운영하도록 하는 행정안전부 지침과 상위법령과의 법규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감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그 기능을 (신설되는) 감사청구심의회가 담당하도록 하였음.
- ※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경과
 - 2011. 8. 18 개정안 제출
 - 2011. 10. 11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의결
 - 2011. 10. 27 시행
- ※ (폐지)감사자문위원회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감사운영방향, 부조리 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을 비롯한 제도 개선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바, 서울시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사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감사운영에 관하여 시장에게 자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음.

〈시민감사위원회(제정안)와 감사자문위원회(폐지) 목적(제1조) 비교〉

시민감사위원회(제정안)	감사자문위원회(폐지된 조례)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체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보완하고 감사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며 감사운영에 관한 서울특별시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서울특별시감사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사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집행부는 과거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왔던 감사자문위원회(종전 폐지, 조례상 기능이 감사운영방향, 불합리한 법령, 제도개선 등 추상적, 포괄적으로 규정)와는 달리 매월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감사기본계획 및 감사결과 보고사항, 적극행정 면책심의 등 감사관련 심의·자문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음.

- 2011년 10월 위원회 정비 차원에서 폐지한 감사자문위원회를 다시 시민감사위원회로 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하여 현재 감사관 소관 위원회의 운영현황,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설치 관련 지침¹⁾, 최근 위원회 증가 추세(시장 취임이후 현재 9개 폐지, 19개 신설) 등을 고려하여 설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감사관 소관 위원회 구성 · 운영 현황 〉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년도	기능	2011년 개최실적
공직자윤리위원회	서울특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1993	-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의 심사 및 그 결과의 처리, 퇴직공직자 영리사기업체 취업승인 등	7회
감사청구심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6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15조	2011	- 주민의 감사청구 사항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 기능	2회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 면책제도 운영 규정(훈령 제955호)	2009	- 면책대상의 공익성 · 타당성 · 투명성 등 면책요건 심의	없음 ※2009년 6회
투명성시민위원회	투명성 시민위원회 구성 · 운영 계획(시장방침 제50호)	2009	- 투명성 향상 시책 정책 제언 - 청렴시책 참여 및 홍보 자문 - 「서울특별시 하정청백리상 운영 조례」에 따른 수상자 심의 · 결정	2회

※ 참고로, 조례로서 규정된 감사관 소관 위원회 중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 운영에 관한 조례」(2009. 7. 30 제정·시행)에 따른 “하정 청백리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그 기능을 시장방침(「투명성 시민위원회 구성 · 운영 계획」(시장방침 제50호, 2009. 2.5))에 의해 설치된 “투명성 시민위원회”에서 임의로 심의 · 결정하여 왔음.

나. 세부 내용 검토

1) 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안 제2조는 시민감사위원회의 주요기능으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방향에 관한 사항(안 제1호), 감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호), 감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3호), 적극행정 면책에

1) 행정안전부. (2009. 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해설 및 관련지침. "위원회 설치시 고려사항". 34쪽.

관한 사항(안 제4호), 부패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안 제5호), 기타 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안 제6호)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호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제5호 ‘부패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은 2011년 「시민감사옴부즈만 조례」 개정 당시 신설된 감사청구심의회 의 주요기능(제15조제3항)으로 규정 한바 있으나, 금번에 신설하는 시민감사위원회의 기능으로 이관하고자 하고 있는 것임.

〈 위원회 기능 비교 〉

감사자문위원회 (기존 폐지 위원회)	감사청구심의회 (현행)	시민감사위원회 (본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 부조리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감사청구심의회 의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감사청구 요건 심사·유효서명의 확인 · 서명에 관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 옴부즈만 감사 적절성 여부 · 그 밖에 주민감사청구사항 등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감사자문위원회 기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감사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 감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감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 부패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안 제2호와 제3호는 지금까지 내부적으로 추진해 오던 감사기본계획과 감사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나,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뿐만 아니라 결과 및 조치에 대한 대시민 공개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공표의 범위까지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2012년의 경우는 27회 정도 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감사결과 보고서 월 2.25회 정도의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안 제4호는 그동안 훈령(서울특별시 면책제도 운영규정(훈령 제970호))에 의해 구성·운영하여 온 '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인 적극행정 면책²⁾에 대한 사항을 시민감사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1항제4호), 적극행정 면책의 심의대상, 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고(안 제2조제2항) 있음.

※ 기존에는 적극행정 면책심의사항에 대해 신청건수가 연 5~8건에 불과했으나 향후 시민감사위원회 개최시 적극행정 면책심의사항을 함께 심의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현행 적극행정면책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서울특별시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제9조(적극행정 면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12조(위원회의 회의)에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 예정.

- 다만, 본 조례의 목적에서 감사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 취지를 감안하여 볼 때, 개별 공무원의 면책에 대한 사항의 심의뿐만 아니라 심의 대상, 요건 등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훈령이 아닌 규칙에 의해 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또한,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순수한 자문이 아닌 심의 및 자문으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시의 정책이나 계획을 심사하는 심의기능까지 포함시킬 경우 심의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심의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다고 할 것인바, 심의기능을 감사위원회의 기능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2) "적극행정" : 공무원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면책" :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또는 비효율, 손실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등에 대한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이하 "감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 자문, 심의, 의결의 효력 비교 〉

- 자문 : 자문(의견·권고)은 법률적으로 행정청을 구속하지 않음
- 의결 : 행정청을 구속하며, 의결이 없으면 유효한 행정청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없음.
- 심의 : 법규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다면 그 결과의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사전 심의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함.

2) 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은 제3항 각 호의 자격 요건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1.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서울특별시 감사관(당연직으로 한다)

- 위원 중 시의회 의원 2명과 공무원(감사관 당연직 임명)을 제외하고 2/3에 해당하는 위원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하여, 감사행정에 시민단체 등의 참여 통로로 활용될 것으로 보임.
- 다만, 시의원 2명과 당연직 의원을 제외한 민간위원 구성의 경우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라 민간위원이 공정하게 위촉될 수 있는 방안과 다양한 의견을 가진 민간위원의 참여가 9명의 위원 수로 적정한지 위원회 운영 효율성 측면과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가령, 제4호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의 경우 성향이나 활동분야 등이 다른 수많은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단체)가 존재하고 있어 그 중 어느 시민단체의 대표나 임원을 선정할 것인가에 따라 위원회의 성격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임.

※ 감사청구심의회 : 9명 이상 13명 이하
기존 감사자문위원회(폐지) : 12명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 제6조(위원회의 주민참여)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일반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위원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정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한다.

- 위원 중 1/3에 해당하는 자를 서울특별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것은 집행부의 뜻에 맞는 인사를 집행부가 위촉하는 독단적인 운영을 방지하고 집행부 및 시의회로부터 일정 부분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의 성격상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할 것임.
- 다만, 안 제3항의 본문 내용 중 약식용어인 ‘시의회’ 대신 ‘서울특별시의회’로 보완하거나, 내용이 중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제3항의 본문 내용과 제1호의 내용은 간단명료하게 보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가령, 안 제1호의 ‘시의회 의원’은 감사행정에 대한 보다 이해가 높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 2명’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3) 위원의 임기(안 제4조)

-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당연직 위원인 감사관의 경우는 그 직에 재임중인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 조례안대로 한다면 모든 위원의 임기가 2년인 만큼,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이라는 표현은 불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며, 당연직인 “감사관”뿐만 아니라 “시의원”의 경우에도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임기를 명확히 하는 등 보완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4)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

- 안 제5조 제1항은 위원장의 직무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의 내용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으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것 보다는 위원장 선임규정과 같이 위원 중에서 호선에 의하여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민주적인 운영으로 보임.

5) 회의 운영(안 제6조)

- 안 제6조는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회의소집과 서면심의 근거, 제2항은 개의 및 의결 사항, 제3항은 관계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진술과 자료제출에 관한 권한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제1항의 회의 구분(정기회의 및 임시회의)과 월 1회 정기회의 개최의 경우는 안 제2조의 기능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매월 각 시기에 맞추어 정기회의 개최가 가능하게 안건이 상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서면심의 사항에 대한 ‘단순 보고 사항 등 심의사항’이라는 문구는 보다 간결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6) 간사(안 제8조) 및 회의록 작성(안 제9조)

- 안 제8조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감사 담당관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직 변경에 따라 ‘감사담당관’의 직명이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위원회 담당부서인 ‘감사총괄부서의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7) 수당지급 등(안 제10조)

- 안 제10조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안전심의회와 관련한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례에 참석수당, 심사수당, 여비 외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경비 등과 관련된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등을 감안하여 ‘수당 및 안전심의회와 관련한 기타 경비’ 보다는 ‘관련 경비’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됨.

8)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따른 조문 정비 요망

- 본문 내용 중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4판)」과 맞지 않는 표현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4조제2항 중 “잔여 임기로” → “남은 기간으로”
- 제5조제2항 중 “없는 때에는” → “없을 때에는”
- 제6조제2항 중 “개의하고” → “개의(開議)하고”
- 제11조 중 “당해” → “해당”
- 제13조 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 “운영에 필요한/관한”

9) 부 칙 : 다른 조례의 개정 필요

- 또한 부칙에서 본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는 감사청구심의회 기능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의 관련 규정(「시민감사옴부즈만 조례」 중 제15조 제3항)의 삭제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안과 함께 제출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15조제3항을 삭제하여 제출하였으나, 제237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안은 상정되지 않아 일단 삭제하지 않고 수정안가결한 바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안 목적에서 투명성심의위원회와 다른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 투명성심의위원회와 적극면책심의위원회는 폐지할 예정이며, 본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질의) 작년에 감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시민감사옴부즈만 조례 제15조제3항에 넣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답변) 제237회 회기때 같이 올렸는데 시민감사옴부즈만 조례만 통과되면서 그 부분을 수정하지 못하였음.

(질의) 조례의 폐기·제정은 신중히 해야 하는데 자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의견은?

(답변) 시장이 부임하면서 시민의 감사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해 주었으면 함.

(질의) 감사자료 제출 요구 등 관련 조항을 보면 시의회보다 더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라 보이는데 의견은?

(답변) 그렇지 않음.

(질의) 투명성이나 시민참여에서는 긍정적이나 행정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답변) 감사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장치로 이해해 주었으면 함.

(질의) 위원장 궐위시 지명한다고 했는데, 호선할 필요가 있다고 봄.

(답변) 그럴 필요가 있음.

5. 토론 요지 :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회의결과를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문맥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과 맞지 않는 조문 등을 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 중 감사결과 보고뿐만 아니라 공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함(안 제3조).
-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 등 회의결과를 시의회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신설).
- 그밖에 문맥의 간결하고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과 맞지 않는 조문 등을 보완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부칙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제15조제3항을 삭제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7. 심 사 결 과 : 수정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일치).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685
----------	-----------

제안년월일 : 2012년 7월 9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수정이유

- 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한 보고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 회의결과를 보고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고, 문맥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지 않는 조문 등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의 기능 중 감사결과 보고뿐만 아니라 공표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함(안 제3조).
-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 등 회의결과를 시의회와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7조 신설).
- 그밖에 문맥의 간결하고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맞지 않는 조문 등을 보완함(안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 부칙에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제15조제3항을 삭제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항제3호 중 “보고”를 “보고 및 공표”로 한다.

안 제3조 제3항 본문 중 “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 하고, 제3항 제1호를 “1.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안 제4조 제1항 중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를 “위원의”로, “감사관의”를 “감사관 및 시의회 의원의”로 하고, 제2항 중 “새로이”를 “새로”로, “잔여 임기로”를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안 제5조 제1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제2항 중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을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으로 한다.

안 제6조 제1항 중 “단순 보고사항 등 심의사항이”를 “사항이”로 하고, 제2항 중 “개의하고”를 “개의(開議)하고”로 하며, 제3항 중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의”를 “자료의”로 한다.

안 제7조는 본문 중 “위원은”을 “위원”으로 하여 제8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심의·자문 사항의 보고) 위원회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회의결과를 시의회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안 제8조는 본문 중 “감사담당관”을 “감사총괄부서의 담당관(과장)”으로 하여 제9조로 한다.

안 제9조를 제10조로 하며,

안 제10조는 본문 중 “수당 및 안전심의회와 관련한 기타”를 “관련”으로 하여 제11조로 한다.

안 제11조는 본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여 제12조로 한다.

안 제12조를 제13조로 한다.

안 제13조는 본문 중 “관하여”를 삭제하여 제14조로 한다.

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사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사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감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감사결과 <u>보고</u>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5. 부패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p>② 제1항제4호와 관련한 심의대상, 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2. 감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감사결과 <u>보고 및 공표</u>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5. 부패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p>② 제1항제4호와 관련한 심의대상, 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p>	<p>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p>

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시의회 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서울특별시 감사관(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장, 부위원장 및 다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감사관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을 포함한 3명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서울특별시 감사관(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감사관 및 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 개최한다. 다만, 단순 보고사항 등 심의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 개최한다. 다만,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

을 진술하게 하거나 심의·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본인이 사임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안전심의와 관련한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의·자문 사항의 보고) 위원회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회의결과를 시의회와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 본인이 사임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총괄부서의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관련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 중 당해 심의·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당해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제12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심의·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제13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사행정에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2. 감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감사결과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4. 적극행정 면책에 관한 사항
5. 부패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 및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와 관련한 심의대상, 요건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을 포함한 3
명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1.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
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을 담당하는 부
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서울특별시 감사관(당연직으로 한다)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감사관 및 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 개최한다. 다만, 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의·자문 사항의 보고) 위원회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등 회의결과를 시의회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 본인이 사임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총괄부서의 담당관(과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관련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심의·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제13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을 삭제한다.